

교회재정공개 좌담회

재정공개 실현과 과제

건강한 교회재정운영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재정공개, 어디까지 누구에게 해야 할까?

건강한 교회재정운영과 투명한 교회재정을 위한 좌담회가 열립니다.

이번 좌담회는 한국교회의 재정 공개에 대한 현황과, 교회재정공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건강한 교회재정운영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재정운영을 고민하는 분들과, 교회재정공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4년 6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열매나눔재단 지하 2층 나눔홀

■ 행사 순서

□ 사회: 김종희 대표(뉴스앤조이)

- 14:00 ~ 14:05 **인사말** |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 14:05 ~ 14:15 **순서1** | ‘34개 교회 결산서 자료제공 협조 요청’에 관한 답변 결과 분석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
- 14:15 ~ 14:30 **순서2** | 교회재정 공개의 의미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 14:30 ~ 15:30 **순서3** | 교회재정운영에 대한 좌담회’
패널 | 문희곤 목사(높은뜻푸른교회)
패널 |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 15:30 ~ 16:00 **순서4** | 질의응답

■ 목 차

- ‘34개 교회 결산서 자료제공 협조 요청’에 관한 답변 결과 분석 |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
3p
- 교회재정 공개의 의미 |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8p
- 교회재정운영에 대한 좌담회 | 문희곤 목사(높은뜻푸른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3p
- 단체소개
14p

■ 순서1

‘34개 교회 결산서 자료제공 협조 요청’ 에 관한 답변 결과분석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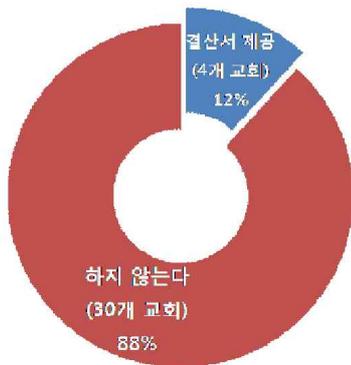
I. 전체 결과

※ 1차 공문 발송: 2013년 11월 8일(금) - 답변기한: 2013년 11월 29일(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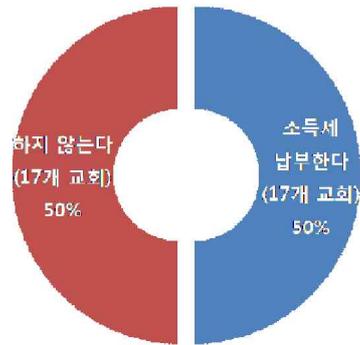
※ 2차 공문 발송: 2013년 12월 31일(화) - 답변기한: 2014년 1월 24일(금)까지

- 총 34개 교회 중 결산서 제공한 교회는 4개 교회(12%), 소득세 납부하는 교회는 17개 교회(50%)

전체 34개 교회 중 결산서 제공 여부



전체 34개 교회 중 소득세 납부 여부



- 교단 별 통계

합동 10개(사랑의, 수영로, 충현, 분당우리, 오륜, 제자, 삼일, 호산나, 새로남, 열린)
통합 6개(명성, 소망, 온누리, 영락, 주안장로, 거룩한빛광성)
감리 5개(광림, 금란, 송의, 선한목자, 만나)
기성 3개(신촌성결, 중앙성결, 충무)
기장 3개(경동, 한신, 동광)
기하성 2개(순복음인천, 여의도순복음)
독립교단 2개(백주년기념, 할렐루야)
예하성 1개(은혜와진리)
기침 1개(지구촌)
고신 1개(울산)

II. 결산서 제공 및 소득세 납부 교회

- 결산서 제공한 교회(4개 교회)

온누리교회(통합), 거룩한빛광성교회(통합), 울산교회(고신), 백주년기념교회(독립교단)

- 소득세 납부하는 교회(17개 교회)

명성교회(통합), 소망교회(통합), 온누리교회(통합), 영락교회(통합), 주안장로교회(통합), 사랑의교회(합동), 충현교회(합동), 분당우리교회(합동), 오륜교회(합동), 열린교회(합동), 순복음인천교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교회(기하성), 선한목자교회(기성), 만나교회(기성), 지구촌교회(기침), 경동교회(기장), 백주년기념교회(독립교단)

- 소득세 납부하지만 결산서 제공하지 않는 교회(15개 교회)

명성교회(통합), 소망교회(통합), 영락교회(통합), 주안장로교회(통합), 사랑의교회(합동), 충현교회(합동), 분당우리교회(합동), 오륜교회(합동), 열린교회(합동), 순복음인천교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교회(기하성), 선한목자교회(기성), 만나교회(기성), 지구촌교회(기침), 경동교회(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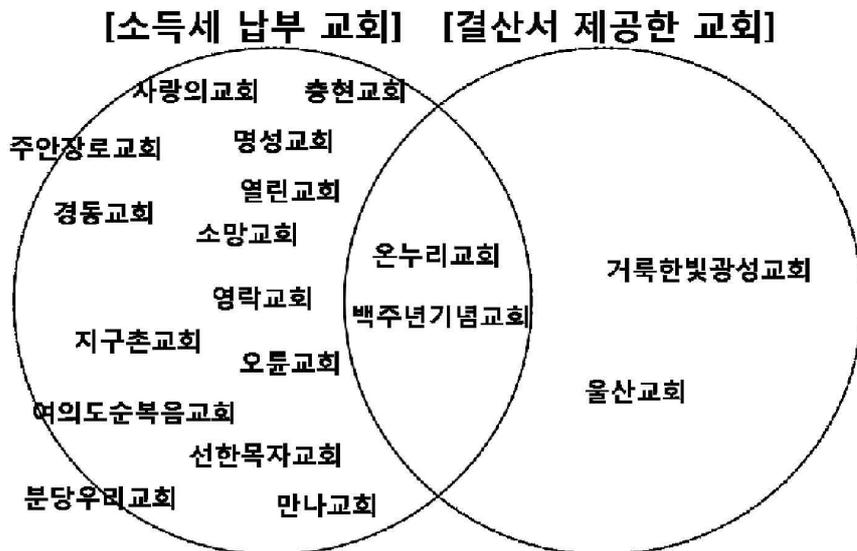
- 소득세 납부하고, 결산서도 제공한 교회(2개 교회)

온누리교회(통합), 백주년기념교회(독립교단)

- 소득세 납부하지 않지만, 결산서 제공한 교회(2개 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통합), 울산교회(고신)

- 소득세 납부 및 결산서 제공여부 도표



III. 각 교회별 답변(* 응답한 교회만 집계)

1) 귀 교회는 재정 결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공시하십니까?

(1) 스크린 화면 (과워포인트 등)	9개 - 열린, 동광, 호산나, 삼일, 충현, 명성, 여의도순복음, 순복음인천, 온누리
(2) 교회 홈페이지	2개 - 거룩한빛광성, 백주년
(3) 인쇄물	7개 - 경동, 울산, 삼일, 거룩한빛광성, 백주년, 순복음인천, 영락

- '스크린화면'과 '인쇄물' 둘다 공시 2개 교회(삼일, 순복음인천)

- '홈페이지'와 '인쇄물' 둘다 공시 2개 교회(거룩한빛광성, 백주년)

2) 귀 교회는 재정 결산서 제공하는 주 대상은 누구입니까?

교인	12개 교회-명성, 순복음인천, 온누리, 여의도(제직성도), 영락, 충현, 삼일, 호산나, 울산, 경동, 동광, 열린
외부인	2개 교회-백주년, 거룩한빛광성

3) 귀 교회는 결산서를 몇 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공개하십니까?

매월	6개 교회 - 온누리(당회만), 여의도(제직회만), 영락, 백주년, 울산(당회만), 동광(2개월마다)
분기별	7개 교회 - 순복음인천, 백주년, 거룩한빛광성, 호산나, 울산(제직회만), 경동, 열린
반기별	0개 교회
연간	8개 교회 - 명성, 온누리, 여의도, 영락, 충현, 백주년, 삼일, 울산(공동의회)

(* 영락교회와 백주년교회는 매월과, 연간 결산서를 공개합니다.)

4) 귀 교회에 시무하는 목회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습니까?

납부하고 있다	9개 교회-명성, 순복음인천, 온누리, 영락, 충현, 백주년, 경동, 열린, 여의도순복음
납부하지 않고 있다	5개 교회-삼일, 호산나, 울산, 동광, 거룩한빛광성

5) 신고하고 있다면, 시행 시기를 기술해주세요.

명성교회	약 20년 전부터
온누리교회	2000년도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	1986년도부터
영락교회	1960년도부터
충현교회	1998년도부터

백주년기념교회	2005년 7월 교회 설립 이후
---------	-------------------

6) 신고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전임사역자	순복음인천, 영락, 백주년
파트사역자	경동
기타	충현(목사, 전도사, 직원)

IV. 결산서 자료제공 요청과 그 답변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의미들

1. 요청서를 보낼 후보로 선정된 34개 교회는 언론상 인지도가 있는 중대형교회 중에서, 지역과 교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부추천을 통해 선정되었기에, 한국교회 전체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다소 모본이 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했다. 통계적 표본이라기보다 포커스그룹 리서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정도의 응답률만을 보인 것을 볼 때 한국교회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2. 또한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는 데에는 2차에 걸쳐 요청을 보내는 등 예상 밖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각 교회가 이런 종류의 답변에 대해 익숙지 않다는 것과 이 주제에 관한 한 외부의 요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파송선교사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보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걸렸으리라 예상된다.
3. 응답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 통상적인 예상과는 달리, 목회자 납세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한편 대외적인 재정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이는 중소교회의 경우와는 다소 다른 양상인데, 대개 중소교회의 경우 목회자 납세는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대외적으로 재정결산서를 제공하는 곳은 소수인 가운데, 재정 공개를 명목상으로는 많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대내적인 공유마저도 홈페이지나 인쇄물보다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단회적 보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재정공개の本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5.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응답한(파악된) 교회들도 그 시행시기와 원천징수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기초조사에서 답변 자체를 거부한 교회들에 대해 다른 경로를 통해 소득세 납부여부를 파악한 경우가 더 많은데, 시행시기와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6. 각 지역교회는 현재 특별한 감사 사안에 결부되지 않은 한 총회나 노회에도 재정결산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등의 외부단체에 결산서를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도 확인되었다. 홈페이지 등에 올라오는 재정결산서 등도 공시로서의 정보보다는 공개행위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정공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다만, 이러한 공신력 있는 재정공개 검증기관이 대형교회나 특정교파 등을 통해 설립될 경우, 자칫 재정공개를 통한 신뢰도마저도 사유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과제이다.

7. 결론적으로 한국교회의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집중해서 계몽해야 할 영역으로 개교회의 재정공개운동은 당분간 유효하며, 이를 위해 모본이 될 다수의 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교단차원의 재정공개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느 교단이 재정투명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경주하게끔 도전하고 격려하는 일들도 병행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순서2

교회재정 공개의 의미

최호운 회계사(삼화회계법인)

1. 들어가는 글

주식회사에 출자한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경영을 위임한 이후 위탁자의 입장에서 수탁자인 임원들이 경영 결과로서 작성한 결산서를 보며 경영을 잘 하였는지 평가하고 계속 경영을 위탁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회사 내부 사정으로 임원들이 주주들에게 결산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주주로서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상법은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위탁자로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가지는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교회 재정 공개여부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재정공개로 발생하는 진행의 어려움을 막고자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재정공개요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고민하고, 담임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관규정을 개정하여 재정공개를 막을 수 있다는 무용담을 나누는 현실 앞에서 교회가 감당해야하는 재정관리와 이의 결과인 재정공개 의미와 속성에 대해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 교회 재정관리의 역학관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는 ‘소유자로서의 출자자’와 ‘관리자로서의 경영자’의 정체성이 구분되기에 재정관리의 주체와 보고의 주체, 보고의 대상, 보고의 범위 등이 명확해진다.

교회의 재정관리는 누가 누구에게 관리를 위임하는가?

영리기업의 경우 출자자가 관리를 위탁하고, 비영리법인은 출연자들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 상법 제466조 제1항: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것을 조건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나 교회는 현금/연보를 출연한 교인들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관리책임을 받는 독특한 이중적 구조다. 이중적 구조이지만 수탁자는 ‘교회’로 동일하므로 교회재정관리 수탁자로서의 ‘교회’의 개념에 대해 정리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적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개체로서의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모이는 과정’과 ‘모이는 단체’로서의 의미를 포함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봉사를 통하여 결합된 포괄적인 공동체 구성원*을 의미한다.

위탁자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이고, 이차적으로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이다.

교회재정관리의 구조는 개체로서의 교인들이 개체들의 집합체로서의 교회에 재정관리를 위탁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보고/재정공개는 이차적 위탁자인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일차적 위탁자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관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교회 재정관리의 공공성

아담의 타락이후 구약시대 세상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와 ‘일반 공동체’로 구분되며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일반 공동체인 이방족속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만 했었다. 이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부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일반 공동체인 일반 세상/사회에 대한 영적 부담감을 가져야만 한다.

신앙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나라 백성들간의 사랑이 구현되는 공동체적 모습을 보임으로 일반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앙공동체로 나아오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육신의 공동체적 연장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비적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의 공공성이 의미를 가진다.

재정보고는 교회의 사역 결과를 숫자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교회 재정이 공동체 이상구현이라는 맥락에서 신앙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관리 결과 또한 일반공동체에 공개됨으로 일반공동체가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신앙공동체로 나아오도록 한다는 점에서 재정공개가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는 중요하다.

4. 투명성

투명성은 재정공개로 확보되는 속성이다.

투명하다는 것은 유리창너머로 보는 것 같이 내역들을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해관계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정보를, 제약없이 접근 할 수 있을 때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투명하다는 것이 바르게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명하면 드러난 과정들을 보며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바른 재정관리의 ‘충분조건’은 아

* 한스 킹, 교회란 무엇인가, 분도출판사, 2012, pp64~65

**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IVP, 2002, P69

니지만 ‘필요조건’으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관리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내가 수행한 결과는 나의 소유가 아니며, 나의 오류와 실수를 지적하면 겸허히 개선하겠다’는 청지기 관점의 관리자적 고백과 ‘본인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겸손의 표현이다.

5. 재정공개와 질(質)과 양(量)

재정공개는 공개되는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개되는 정보가 가지는 질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전제로 해야한다.

재정을 집계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표현하며, ‘회계(會計)’는 특정한 모임(group, 會)으로 집계(計)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는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일련의 재정적 사건의 공통적 속성(계정과목)으로 집계하여 재정적 사건의 총괄적 의미를 파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거래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재정공개 정보 이해차원에서 부족하며, 발생한 일련의 재정적 사건들이 가지는 총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정보이용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결산서의 숫자적 표현으로 부족한 속성적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재정공개와 걸림들

(1) 효율성과 신속성의 장애물

재정을 공개하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일부 교인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함으로 교회가 해야하는 사역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우리는 ‘누가 사역을 진행하고?, 누가 교회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해야한다.

교회의 의미가 공동체적 구성원의 집합체라는 관점에서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내 힘 있는 개인 또는 일부 집단이 하는 것이며, 소수가 교회의 이름으로 다수 교인들의 청지기적 사명을 강탈하는 것이다.

신속성과 효율성이 교회 차원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소수 집행진 차원에서의 고민이라면 이는 교회의 재정관리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 결과 이전에 수행되는 공동체적 진행과정에 의미가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해의 깊이가 부족하더라도 좀 더 강한 사람이 좀 더 약한 지체들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고, 기다리는 과정자체가 바로 사랑으로 더불어 같이 가는 공동체로서 가져야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2) 약한 지체들의 부담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의 경우 어려운 재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까 하는 염려로 재정을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전히 동일한 관점의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 믿음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지체를 염려하고 배려하는 것은 의미 있을 수 있으나, 배려 이전에 믿음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하는 믿음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제자로서 입교하는 구성원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제자로서 교회의 청지기적 주체감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 관객, 이적과 기사를 찾아 다니던 무리로 전락 시키는 것이 아닌가?
- 재물을 가지면 심적 여유가 있고 재물이 없으면 심적 부담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과 맘몬 중 누구로부터 평안을 얻는 것인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또한 구성원들이 같이 풀어갈 사안으로 인식될 때 교회의 공동체성은 회복된다.

(3) 지역교회 중심적 사고(思考)

지역교회 구성원 이외의 자들을 모두 외부인으로 보고, 재정정보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교회가 폐쇄적 사교(社交)집단이라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이다.

지역교회는 특정 지역의 구속사역으로 부름 받았지만 지역교회 구성원만의 별도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적 필요에 의해 여러 곳에 산재하지만 각각 별개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족속을 향하여 택함 받았지만 선민사상에 갇혀 넘어진 상황이 세상을 향하여 부름 받은 교회가 성민(聖民)사상에 갇혀 일반 사회를 품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으로 되었기에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현실앞에서 교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보며 회개해야 한다.

(4) 미덕으로 보는 덮어주는 관행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내기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앞세워 덮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사랑의 미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죄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하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린 이후 잘못에 대한 회개와 개선이 있을 때 공동체가 포용하면서 수용하는 것이 바른 사랑이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덮기만 하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들이 면죄부를 부여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교회 재정관리는 교인들에 대한 수탁자적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수탁 책임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적 구조이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수탁자적 책임을 면제시킬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다.

(5) 투명한 정보공개에의 단점

교회 재정 사용에서 구제비 지출, 장학금 지급 등 특정한 경우 개인의 자존감(Privacy)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명한 정보공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 한스 링, 전게서, p67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i) 비용지출에 대한 원칙(또는 규정)을 사전에 정하고, ii)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되 iii) 특정인 단독의 결정이 아니라 위원회와 같은 공동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하고 iv) 공동의사결정기구내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7. 나가는 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는 재무정보가 많이 노출 될수록 경쟁기업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의 지분만 가져도 회사의 회계장부와 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며 공개한다. 자본이 지배하는 회사에서도 소수를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인정하고 소수가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주식회사보다 더 공동체성이 강해야 하는 교회에서 교인 2/3의 찬성이 있어야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교회에 과연 공동체적 관점이 있는가? 이러한 교회의 관점을 보며 일반사회공동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재정공개를 제한하면서 지키는 가치가 하나님나라 백성 공동체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자신들을 솔직히 내어놓아야 한다.

■ 순서3

교회재정운영에 대한 좌담회

사회자



김종희 대표
뉴스앤조이

패널 1



문희곤 목사
높은뜻푸른교회 목사
예수전도단 전(前) 대표

패널 2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뉴저지초대교회 전(前) 담임목사

■ 단체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구조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재정운영에 있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건강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교육하고 배포하고 실천하여 교회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운동을 합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문의

전화: 02-741-2793 팩스: 02-741-2794 홈페이지: www.cfan.or.kr 이메일: cfan05@hanmail.net

● 목적(사명)

한국교회가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온전한 교회로서 대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한다.

● 운동전략 및 실행계획

1. 연구와 개발 : 성경적 교회재정관 정립, 한국교회 교회재정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모범사례 발굴, 대안제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2. 배포 및 홍보 : 홈페이지 운영, 재정사용 원칙제시, 재정정관 및 조례 보급, 재정관리 매뉴얼화 및 책자보급,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재정담당자 교육
3. 교회현장 운동 : 목회자납세 운동, 재정결산서공개 운동
4. 교육과 컨설팅 : 세미나 및 강좌 개최 및 연구물 발표, 재정문제 상담, 건강한 역할모델 육성

● 함께하는 단체들

교회개혁실천연대

주소_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전화_02-741-2793 팩스_02-741-2794
홈페이지_www.protest2002.org 이메일_protest@protest2002.org

기독교경영연구원

주소_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2 신원빌딩 1층
전화_02-718-3256 팩스_02-718-3528
홈페이지_www.kocam.org 이메일_kocam@kocam.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_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_02-794-6200 팩스_02-790-8585
홈페이지_www.cemk.org 이메일_cemk@hanmail.net

바른교회아카데미

주소_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
전화_02-777-1333 팩스_02-319-1103
홈페이지_www.goodchurch.re.kr 이메일_gcacademy@hanmail.net

재단법인 한빛누리

주소_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7가 서광빌딩 305호
전화_02-924-0240 팩스_02-924-0243
홈페이지_www.thebrightfoundation.org 이메일_thebrightfd@gmail.com